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
(박수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02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.

발 의 자 : 박수영 · 김미애 · 서천호  
곽규택 · 유상범 · 권영세  
서지영 · 박성훈 · 김상훈  
김재섭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나,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주식등에 대해서는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정하여 두고 그 한도 또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음.

이와 같이 낮은 수준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규정은 공익법인등에 대한 주식 출연 등 기부 활성화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.

이에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, 자선·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의 불산입 한도를 50%로 확대함으로써,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 확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기업과 시민사회가 상생하는 공익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제2항제2호가목 등).



##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항제2호가목 중 “나목 또는 다목”을 “나목, 다목 또는 라목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호 다목(중전의 나목) 중 “공익법인등”을 “경우로서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”으로 한다.

나.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(라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)에 출연하는 경우: 100분의 50

- 1)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
- 2) 자선·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
- 3) 제48조제2항제7호에 따른 기준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할 것

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제6호 및 제8호”를 “제6호, 제8호 및 제9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(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)”를 “(같은 호 다목 또는 라목에 해

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)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(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)”으로, “같은 목 1)”을 “같은 호 가목1) 또는 나목1)”로 하며,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제16조제2항제2호가목”을 “제16조제2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제16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(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)이 같은 호 나목3)을 위반하여 출연을 하지 아니한 경우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)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에 관한 적용례)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.



춘 공익법인등(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)에 출연하는 경우: 100분의 20

1)·2) (생략)

<신 설>

나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

-----나목, 다목 또는 라목-----

1)·2) (현행과 같음)

나.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(라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)에 출연하는 경우: 100분의 50

1) 출연받은 주식등의의 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

2) 자선·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

3) 제48조제2항제7호에 따른 기준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할 것

다. -----



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.

1. ~ 5. (생략)

6.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(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)이 같은 목 1)을 위반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

7. 다음 각 목의 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에 100분의1 (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)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(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“기준금액”이라 한다)에 미달
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-----  
-----  
-----(같은 호 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)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(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)-----같은 호 가목1) 또는 나목1)-----  
-----

7. -----  
-----  
-----  
제16조제2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(「소득세법」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거나 「법인세법」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)에 사용한 경우

가.·나. (생략)

<신설>

8. (생략)

③ ~ ⑭ (생략)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
8. 제16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(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)이 같은 호 나목3)을 위반하여 출연을 하지 아니한 경우

9. (현행 제8호와 같음)

③ ~ ⑭ (현행과 같음)